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

■ 권칠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297호)

2025. 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0
1.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 등	10
2.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주요국 대리제도 비교	11
3. 침해소송 (공동)대리 관련 입법 현황(제17대~제22대 국회)	1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5. 1.
3. 회부연월일 : 2025. 5.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례 및 해석을 통해서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 심결취소소송 등 행정소송에 한정하여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음.

특허권침해소송, 손해배상, 권리이전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변리사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고도의 법률지식, 공정성 및 신뢰성이 요구된다는 이유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어, 변리사의 민사소송 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민사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는 경우 민사소송에서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재산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표 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생략)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④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와 관련된 소송은 등록된 권리의 무효나 취소 여부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행정소송)¹⁾과 권리의 침해

1) 특허심판원에서의 심결에 대한 소 및 심판청구서나 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를 의미함.

금지,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²⁾³⁾으로 구분할 수 있음.⁴⁾

현행법 제8조⁵⁾는 변리사의 특허 등에 관한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87조⁶⁾는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만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인정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고,⁷⁾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해석이 입법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으로써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되는 것으로 범위를 명확히 하였음.⁸⁾

2) 특허 등 출원 또는 심결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 사법적 구제를 위하여 제기하는 손해배상, 침해 금지 등의 소를 의미함.

3)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 외에 형사소송도 가능하나, 소송대리인 자격에 관한 사항은 민사소송에만 적용되므로, 형사소송은 제외함.

4) 참고자료 1.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 등

5) 「변리사법」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6)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7)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는 변리사법 제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침해금지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과 같은 민사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8)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므로,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 합리성이 인정되며 입법재량의 범위 내라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그런데 특허침해소송은 심결취소소송과 달리 손해배상의 범위 및 방법, 입증책임, 가처분,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에 대한 고도의 법률전문성이 요구되는 소송인 동시에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므로 특허·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소송임.

기술적으로 복잡해지는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침해소송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특허침해소송에서도 변리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변리사의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⁹⁾

이에 개정안은 변리사로 하여금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를 얻는 경우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지식재산연구원 자료¹⁰⁾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분쟁을 겪은 국내기업 10곳 중 9곳이 중소·벤처기업이며, 중소·벤처기업의 약 80%가 특허분쟁 발생 시 최대 애로사항으로 변리사를 침해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음.¹¹⁾

9)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는 2006년 이후(제17대 이후)부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어 논의되어 오고 있음.

10) 2021년 국내 지재권 분쟁실태조사

11) 지난 20여 년간 법률소비자(*)는 변리사를 출원·심판·심결취소소송 뿐만 아니라 침해소송에서도 활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음.

또한,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경우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인정하고 있는데,¹²⁾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민사소송법」에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2002년도에 「변리사법」을 개정하여 일정한 조건하에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하고 있음.¹³⁾

이상과 같이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 소송대리 허용이 필요하다는 산업계의 요청과 주요국의 사례를 비추어볼 때, 개정안과 같이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전문성과 기술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므로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리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측면에서는 동의하나 소송당사자 요청과 관계없이 법원 재량에 따라 변리사의 소송 참여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것은 안정적인 소송 수행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변

* 과기단체총연합회·공학한림원 등 공동성명('21.6), 벤처협회·이노비즈협회 등 공동성명('21.12)
반도체산업협회·디스플레이산업협회·배터리산업협회·바이오협회 공동성명('23.5)

12) 참고자료 2.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주요국 대리제도 비교

13) 「일본 민사소송법」

제54조 ① 법령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 변리사법」

제6조의2 ①특정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에 합격한 변리사는, 변호사가 동일한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한 사건에 한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때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리사 ‘단독대리’가 아닌 변호사·변리사 간 원활한 ‘협업’의 취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반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으로 확대하는 것은 법체계상 「민사소송법」의 ‘변호사 소송대리원칙¹⁴⁾’과 충돌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변리사의 법률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의견¹⁵⁾도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상의 사항과 후술하는 과거 논의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은 제17대 국회 이후 여러 차례 발의되어 논의되었으나,¹⁶⁾ 법무부와 특허청 등 정부 내부의 의견이 수렴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호사협회와 변리사회 간의 이견 등으로 개정에 이르지 못한 바 있음.

14)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15) 상세한 내용 후술

16) 참고자료 2. 침해소송 공동대리 관련 입법 현황(제17대~제21대 국회)

[표 2]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관련 개정안 입법경과

구분	의안번호(대표발의)	입법 경과
제17대 (2004~2008)	175272(최철국의원)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제18대 (2004~2012)	1801689(이종혁의원)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제19대 (2012~2016)	1905871(이원욱의원)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 ¹⁷⁾
제20대 (2016~2020)	2000212(주광덕의원) 2001977(김병관의원)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제21대 (2020~2024)	2105075(이규민의원)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2124305(권칠승의원)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폐기
제22대 (2024~)	2202604(김정호의원)	상임위 계류
	2210297(권칠승의원)	상임위 계류

그동안 제시된 찬반 양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특허청¹⁸⁾과 대한변리사회 측은 특허침해소송이 필요로 하는 기술적 전문성과 국민의 선택권 보장 등을 주된 찬성 논거로 제시하는 반면,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국민의 소송비용 증가 등을 반대 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17) 개정안 중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었고,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은 대안에 미반영됨.

18) 특허청은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전문성과 기술전문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바 법률소비자 권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변리사 ‘단독대리’가 아닌 변호사-변리사간 원활한 ‘협업’의 취지가 반영된 법무부 합의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임.

이러한 의견은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3] (공동)소송대리 관련 찬반의견

구분	찬성의견(변리사회 등)	반대의견(변호사협회 등)
법체계 정합성 등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 한해 변리사를 선택적으로 선임하는 것이므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	○ 변리사 (공동)소송대리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는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 에 반함
	○ 변리사는 타 자격사와 달리 특허법원에서 심결취소소송을 대리 하고 있고, 특허분야는 기술이해가 필요한 특수분야임	○ 법무사·세무사 등 타 자격사에 비해 변리사에게만 소송대리를 인정할 이유가 없으며, 형평성에 어긋남
전문성	○ 특허침해소송은 특허권 등의 침해여부가 핵심이고 특허와 기술 전문성 이 크게 요구되므로 변리사가 필요함	○ 특허침해소송의 본질은 순수한 법률적 판단 이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함
	○ 소송실무교육 을 통해 변리사의 법률지식을 보완할 수 있고, 공동대리이므로 법률은 변호사, 기술은 변리사가 협업 가능	○ 특허업무 전문가인 변리사에게 소송대리를 허용한다면 법률분야 전문성 부족 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
비용	○ 변리사는 소비자가 필요할 경우 선택적으로 선임하는 것이고, 현재도 변리사 조력 비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	○ 변리사 공동대리제도가 도입되면 변리사를 추가로 선임함에 따라 일반국민의 법률비용이 증가함
해외 입법례	○ 일본 은 변리사 공동대리를 도입하였고, 영국 은 3단계 소송인가증 제도를 통해 단계적으로 변리사의 대리를 허용하였으며, EU 에서는 EU통합특허법원에서 소송인가증을 부여받은 유럽특허변리사의 단독대리도 가능	○ 외국 입법례 참고는 각 국의 법제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선행되어야 가능하며,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에서는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음

한편, 제22대 국회에서는 변리사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¹⁹⁾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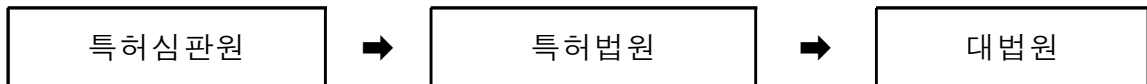
19) 의안번호 제2202604호, 2024. 8. 7. 발의

참고 1

특허 관련 소송의 관할 법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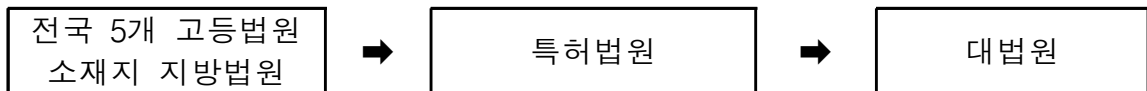
□ 행정소송(심결취소소송)

- '98년 산업재산권의 심결취소소송을 전담하는 특허법원을 설립하여, 특허 관련 행정소송의 관할 집중
- 특허 전문법원의 별도 설치 및 관할 집중을 통해 관련 분쟁을 신속·정확·전문적으로 해결



□ 민사소송(특허침해소송)

- 특허침해 관련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전국 5개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2심은 특허법원으로 관할이 집중되었음



※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 비교

구 분	심결취소소송 (권리범위확인심판)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관할법원	특허법원	전국 5개 지방법원 및 특허법원
대리인	변리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판 단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정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확정
절 차	↓	↓
	확인대상발명 특정	피고실시기술 특정
	↓	↓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피고실시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
		↓
		손해배상액 산정

자료 : 특허청

참고 2

특허침해소송에 관한 주요국 대리제도 비교

구 분	특허심판·심결취소소송 대리	특허침해소송 대리
영 국	○ (단독)	△ (단계적/제한적 허용)
	(과거) 특허지방법원(1심, 소액사건)에 한하여 대리 가능 ('90~'12) (현재) 3단계의 '소송인가증' 제도 신설 → 획득한 소송인가증에 따라 <u>항소심·대법원까지도 대리 가능</u> ('13~) * 모든 변리사는 1심에서 대리 가능한 '1단계 소송인가증'을 부여받고, 英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교육 이수시, 더 높은 단계의 소송인가증 획득 ** 英 'Patent Attorney'는 '특허 대리인'을 의미, 변호사 자격과 전혀 무관	
독 일	○ (단독)	△ (법정진술권)
	특허침해소송에서 오직 변호사만 대리 가능하나, <u>변리사의 법정진술권을 보장</u> → 변호사의 사전신청에 따라, <u>변리사가 서면 준비, 법정변론 및 증인신문 가능</u> (변호사 없이는 무효) * 독일 변리사법 제4조 (1968~)	
일 본	○ (단독)	△ (변호사와 공동)
	(과거) 특허침해소송에서 <u>변리사가 '소송보좌인'으로 참여</u> (1921~) (현재) 특허침해소송에서 <u>변리사가 '소송보좌인'으로 참여</u>하거나 또는 <u>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대리 허용</u> ('02~) * 일본 변리사법 제5조, 제6조의2 ** 변리사가 '소송보좌인'이 아닌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본 변리사회가 주관하는 교육(민법·민소법 등) 이수 후, 시험 통과 필요	
EU 통합 특허법원 (‘23.6월 개원)	○ (단독)	○ (단독, 소송인가증 필요)
	'소송인가증'을 획득한 유럽특허변리사(EPA)는 <u>단독대리 가능</u> ('23.6~) * 유럽통합특허법원협약(UPCA) 제48조 ** 'UPC 연수원' 또는 'EU 내 대학·비영리 고등교육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 이수 시, '소송인가증' 획득 가능 *** EU 'Patent Attorney'는 '특허 대리인'을 의미하며, 변호사 자격과 전혀 무관	
미 국	변호사(Attorney at Law)로서, ① 자연과학·공학을 전공하고, ② 美 특허청 주관 시험(patent bar)까지 통과한 자를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라 하고, 대다수 특허소송은 일반변호사가 아닌 특허변호사가 수임	

참고 3

침해소송 (공동대리 관련 입법 현황(제17대~제22대 국회)

□ (공동)소송대리 관련 과거 변리사법 개정안 및 입법 경과

대표발의자	개정안	입법 경과
최철국의원 (17대, '06.11.)	제7조의3(특허등침해소송의 대리) ① 변리사는 제7조의4제1항에 규정한 특허등 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에 합격하고, 제7조의6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의 표기를 받으면 특허등 침해소송에 관하여 변호사가 동일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기일에 출석할 때에는 변호사와 동시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다. 제7조의4(특허등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 ①특허등 침해소송 대리업무 시험은 특허등 침해소송 관련 연수를 수료한 변리사를 대상으로 특허등 침해소송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되는 데에 필요한 학식 및 실무능력을 검증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이 실시한다. ② 특허등 침해소송 관련 연수 및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이종혁의원 (18대, '08.11.)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 ----- . 다만, 특허 등의 권리에 관한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대표발의자	개정안	입법 경과
이원욱의원 (19대, '13.7.)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 개정안 중 변호사의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하는 내용이 대안에 반영되었고,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내용은 대안에 미반영됨.	상임위 대안반영 폐기
주광덕의원 (20대, '16.6.)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소송당사자의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소송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 대하여 기술개발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김병관의원 (20대, '16.8.)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변리사회가 주관하는 30시간 이상의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가처분,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단독으로 출석할 수 있다.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이규민의원 (21대, '20.11.)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침해소송에서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상임위 수정가결, 법사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대표발의자	개정안	입법 경과
권칠승의원 (21대, '23.9.)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민사상 다툼이 있는 사건의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리사가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법원은 언제든지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상임위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
김정호의원 (22대, '24.8.)	제8조(소송대리인이 될 자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한정하여 그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된 변리사가 재판기일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되려는 변리사는 소송실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상임위 계류 중